

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
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공모

2026. 2.



한경국립대학교

산학협력단 공고 [GNC-RISE] 제2026-001호

『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』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.

2026년 2월 20일

산학협력단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경기도 미래성장산업(G7) 및 지역기반산업(GX) 기업과 대학이 공동 협력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
- 산학연협력 성과 창출의 극대화 및 기술혁신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2. 지원내용 및 규모

□ 지원분야

주제(분야)	연구기간	과제 수	연구비
경기도 미래성장산업(G7) 및 지역기반산업(GX) 분야 산업 수요의 사회문제 해결 기술	2026. 3.~2026. 7. (5개월/1차년도)	7과제	과제당 25,000천원 (총예산 175,000천원) ※ 기업부담금 별도

※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- 경기도 내 기업이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대응을 원칙으로 함(기업부담금: 현금+현물)
 - ※ 기업 유형별 대응 최소 현금부담비율은 10~20% 이상
-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(NTIS, <https://ntis.go.kr>) 내 차별성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차별성(유사성) 검토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[검토 절차]

1. NTIS 접속 및 로그인: <https://ntis.go.kr>
2. 메뉴: [R&D 과제 준비] ▶ [차별성 검토(舊.유사과제)] ▶ [차별성 검토 시작하기]
3. 제출 결과물: [결과조회] 화면 캡처본과 양식의 '차별성(유사성) 검토 확인서' 제출

- 연구 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차년도 계속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개별 갱신협약 진행함
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- 지역기반산업(GX) 참여학과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며, 참여교원, 학생,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임·직원,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

※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구책임자

- 참여가능 기업은 경기도내 기업*으로 한정하며, 과제의 연구진 구성시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연구진을 필수로 포함(최소 1명 이상)

* 경기도 내 기업 기준은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주사무소 소재, ② 등록공장 소재,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

-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% 이상의 비율로 함
- 참여기업은 기업 연구비(현금+현물) 대응(매칭)이 필수적이며, 사업비 기준 25% (현금+현물) 이상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, 10~2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
-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(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)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2항 4호에 의거, 본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(3책 5공 해당되지 않음)

- 학생연구자는 지역기반산업(GX) 참여학과 학생의 경우 참여가능함
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교원 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기업으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, 타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

□ 참여제한

- 공통사항: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 - 신청과제가 타과제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- 연구책임자, 기업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※ 4대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
- ※ 단, 참여제한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※ 참여제한 여부는 NTIS 제재정보조회 결과 자료 제출(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확인(소속기관) 제재정보 확인서)

4. 선정 평가기준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(점)
과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	·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(구체성)	20
사업 목표 부합성	· 우리대학 G7 및 GX 분야의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 · 경기도 RISE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·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	10
연구역량 및 협력 체계	· 대학, 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및 참여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(역할 및 실행력)	25
기술적 차별성	· 기 수행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와의 차별성	20
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성	·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	25
합계		100

※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(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

5.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(유의사항)

□ 접수기간 : 2026년 2월 27일(금) 16:00까지

추진일정	추진내용
2026. 2. 27.(금) 16:00	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
2026. 3월 1주	선정평가
2026. 3월 13(예정)	기술개발과제 선정 결과 발표
2026. 3월 3주	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과제 개시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수 있으며,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공모 및 선정 가능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처

- 신청방법: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
- 제출처
 - 서면: 산학협력단 직접 제출(산학협력관 108-1호 산학연구팀 배명진)
 - 이메일: mjn2325@hknu.ac.kr(배명진)/Tel: 031-670-5610

□ 제출서류

- 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
- 차별성(유사성) 검토확인서 1부
-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 대응부담 협약서 각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확인(소속기관) 제재정보 확인서(NTIS 제재 정보) 1부
※ 제재정보 확인서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모두 제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기업) 4대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 완납 증명서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- (해당시) 중소/중견기업 확인서 등 1부
- (해당시) 기업인증서(벤처기업확인서, INNO-BIZ 확인서,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) 각 1부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7과제 미만으로 신청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
- 과제제안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
6. 제출 결과물 및 의무사항

□ 제출 결과물

- 연구 결과보고서(원본 및 전자파일)
- 성과창출에 따른 증빙 서류(기술이전 계약서, 특허 출원/등록증, 논문 등)
- 연구노트

□ 의무사항

- 과제 계획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주요 변경 사항(참여기업, 연구책임자, 과제목표, 연구개발비, 수행 기간 등)이 발생할 경우,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 수행의 적정성을 승인받아 변경할 수 있음
- 과제의 성과는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 대학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성과의 유형, 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
- 지산학협력 기술개발의 결과는 연구진(대학, 기업, 기타 협력기관)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하여야 함

<발표 및 결과물 등의 삼입 문구>

-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수행한 과제에의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
국문 표기시	본 과제(결과물)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경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(경기RISE사업)의 연구결과입니다.
영문 표기시	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"Gyeonggi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 Project(Gyeonggi RISE Project)" ,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nd Gyeonggi Province.

- 과제의 최종보고서(결과보고서) 및 기술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는 과제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RISE사업단 심의·의결 기구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」 및 「한경국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 지침」에 의거하여 연구노트를 기록·관리하고 **연구노트**를 제출해야 함
-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한경국립대학교와 **얼라이언스 회원사** 가입을 필수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, 향후 **한경국립대학교 RISE사업**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
7. 적용법령·지침 및 기타사항

□ 적용지침·법령

- 「경기도 RISE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운영매뉴얼」 및 「한경국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」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동법 시행령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준용함

□ 기타사항

- 연구책임자가 집행 신청시 산학연구관리시스템(<https://rerp.hknu.ac.kr>)에서 전자 신청(증빙 스캔 첨부)하여 사업비를 관리함
-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,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여야 함
- 과제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RISE 사업단 심의·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본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
 -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기관이 법령, 규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,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- [붙임]
1. 한경국립대학교 미래성장산업(G7) 및 지역기반산업(GX) 분야 참여학과 1부.
 2. 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.
 3. 차별성(유사성) 검토확인서 1부.
 4.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 대응부담 협약서 각 1부.
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 6. (참고용) 국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1부.
 7. (참고용) 경기도 RISE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운영매뉴얼 1부. 끝.